

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

1. 제출기관 및 금융상품

제 출 기 관		금 용 상 품		
사업자등록번호	법인명	판매예정 연월	과세구분	금융상품명

2. 약관,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
(PDF, HWP,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)

3. 상품설명서, 투자설명서,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
(PDF, HWP,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)

4. 기타
(PDF, HWP,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)

(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익구조, 투자대상, 자산운용방법 등)

작성 방법

- 1. 제출기관: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2. 금융상품 판매예정 연월: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 시작할 예정 연월을 적습니다.(상품판매 예정연월이 2012년 12월인 경우: 201212)
- 3. 금융상품 과세구분: 작성대상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'과세구분'을 적습니다.
※ 과세구분 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3호서식(1)(이자·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·지급명세서)의 작성방법 참고
- 4. 금융상품명: 띄어쓰기 없이 적습니다.[국문·영문 혼합 가능, 특수문자(「, 쉼표 등) 제외]
- 5. 약관,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: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.
- 6. 상품설명서, 투자설명서,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: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,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서류 등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.
- 7. 기타(수익구조, 투자대상, 자산운용방법 등):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상품구조 등을 적습니다.(상품설명서 등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)